

## 특별조사 결과

구분	지적 및 조치 요구
출판인쇄 독서진흥과 · 한국출판 문화산업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A'가 'B'를 신고한 128건의 도서정가제 위반사항을 처리하면서, B가 특별민원(악성 · 고질민원) 제기업체라는 이유로 기존의 관행과 다르게 위반업체(B)의 소명 절차를 생략한 채, 업무 관행과 규정 미비를 이유로 내부 검토 및 결재(승인) 없이 통신판매중개업자(C)에게 판매중단 및 판매 중단 해제요청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li><li>○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1. 11. 16.~11. 19. 기간 중 B가 4차례 제기한 판매금지 해제 추가요청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A 간의 유착관계 의혹 민원에 대하여, '21. 11. 19. B의 자율 시정 조치 미이행 사실과 A과 유착관계는 사실무근임을 1차례 회신 하였을 뿐, B가 가격수정을 미이행한 35개 품목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21. 11. 20.~12. 9. 기간 중 B의 추가 민원 4건에 대해서는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추가 답변, 처리 상황 안내 또는 종결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li></ul> <p>⇒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향후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사항 처리 시, 확정된 업무처리기준 없이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조치하거나, 신고된 사항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주의” 조치할 것(기관주의)</p> <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사항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기준 및 절차(처리기한 설정, 내부 검토 · 결재, 반복 신고사항 종결, 특별민원 대응 등)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자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것(통보)</p>